



부록 |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4학년도 시준6 제9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독서 _____ 92쪽

문학 _____ 99쪽

처분의 취소와 무효

지문 평가

전형적인 법학 지문의 구성을 취한다. 모든 문장에 대하여 '취소, 무효'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하는데, 정보의 밀도가 낮은 편은 아니어서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한다. 실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보다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 때그때 적절한 독해 요소들을 활용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문이다.

키워드

사회 - 법학 - 처분, 취소 사유, 무효 사유

행정청, 처분, 하자, 취소 사유, 행정 쟁송, 취소, 무효 사유, 당연 무효, 무효 판결, 무효, 하자의 명백성, 위헌, 과세 처분, 체납 처분, 선행 처분, 후속 처분, 하자의 승계에 관한 원칙, 대법원 판례

문단 1 처분의 취소와 무효

- 1)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법을 집행하는 일을 **처분**이라 한다. 처분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는 대개 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보통 취소 사유로 인해 처분의 상대방이 피해를 입더라도 **행정 쟁송** 등에 의해 그 처분이 실제로 **취소**될 때까지는 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영향을 받는 제삼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 '하자'는 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저절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처분이 실제로 취소되려면 '행정 쟁송'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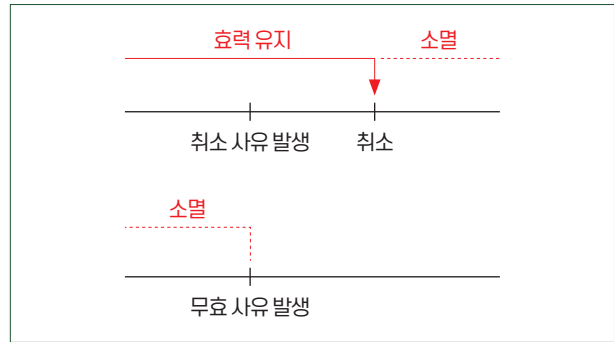
※ **주목** 중요한 점은 해당 처분이 실제로 취소될 때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는 '법적 안정성의 확보, 해당 처분의 영향을 받는 제삼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 2) 그런데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할 경우가 있다. 그럴 때에는 법률적 절차 없이도 무효가 성립하는 **당연 무효**로 처리되거나 행정 쟁송을 통해 **무효 판결**이 내려진다. **무효**인 처분은 취소와 달리 애초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 **백라 찾기** '무효'를 '취소'와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유사한 개념들이 열거될 때에는 의식적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서 단순한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취소 사유	무효 사유
중대하거나 명백하지는 않은 하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행정 쟁송을 통한 취소 ⇒ 실제 취소될 때까지 효력 유지	• 당연 무효[→ 행정 쟁송 없이 무효 성립] • 행정 쟁송을 통한 무효 판결 ⇒ 애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주목** 중요한 점은 '취소'의 경우 실제로 취소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지만, '무효'의 경우 무효 사유의 발생 이전에 유효했던 효력까지도 소멸시킨다는 점이다.



▶ 즉 '무효 사유'는 위낙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 제삼자의 신뢰 보호'보다도 '처분의 상대방이 받은 피해'를 중시하는 셈이다[문단1-1].

취소 사유	무효 사유
'법적 안정성, 제삼자의 신뢰 보호'를 '처분의 상대방이 받은 피해'보다 중시하는 면이 있음	'처분의 상대방이 받은 피해'를 '법적 안정성, 제삼자의 신뢰 보호'보다 중시하는 면이 있음

문단 2 무효 사유의 요건

- 1)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잘못 해석하거나 법률이 적용되는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한 경우, 또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본다. 그것이 중대한 하자일지라도 그 하자가 명백해야만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 '하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시들이 열거되어 있다. 이러한 예시들은 추후 선지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리 챙겨 두면 상당히 유용하다.

▶ 그러나 '하자'가 곧 '무효 사유'인 것은 아니다.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여야만 무효 사유가 된다. 새로운 내용은 물론 아니다[문단2-2]. 여기서는 그중에서도 '명백성'에 주목하고 있다.

- 2) **하자의 명백성**이란 전문가의 엄밀한 판단이 아니라 통상적인 주의력을 갖춘 일반인의 판단에 의할 때 외견상 하자가 분명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과세 대상이 되는 사실 관계가 전혀 없는 이에게 과세 처분을 내렸다면, 그 처분의 하자는 명백하다. 이와 달리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서 그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하자가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

▶ '하자의 명백성'에 대한 설명이다. 엄밀한 판단이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정도의 '하자'는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쉽게 말해서 누가 봐도 하자가 분명할 때에 '명백한 하자'로 인정되는 것이다.

◎ **백라 찾기** '하자의 명백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져 있으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사실 관계가 전혀 없는 이에게 과세 처분을 내린 경우'가 '누가 봐도 하자가 분명한 경우'에 대응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3) 이렇듯 무효 사유에 명백성의 요건을 둔 것은 개인의 권익 구제를 명목으로 처분의 영향을 받는 이들의 신뢰 보호 등 공공성이 함부로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 **주목** '무효 사유'는 '처분의 상대방이 받은 피해'를 중시하는 면이 있다[문단2-2]. 따라서 무효 사유를 쉽게 인정해 준다면[→ 하자가 있는 처분에 대해 '취소'가 아닌 '무효'가 쉽게 이루어진다면], '법적 안정성, 제삼자의 신뢰 보호'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 따라서 까다로운 '명백성의 요건'을 두어, 무효 사유가 쉽게 인정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대부분의 하자에 대해 무효가 아닌 '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삼자의 신뢰 보호[→ 공공성]를 잘 챙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단 3 근거 법률이 위헌일 때 처분의 취소와 무효

1) 한편, 헌법 재판소에 의해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 것으로 드러나 **위헌** 결정이 난 경우에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가 된다.

➡ 처분은 특정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지는데, 해당 법률이 '위헌 결정'이 나는 경우 그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연 무효'가 된다[문단1-2].

2) 다만 처분이 먼저 내려지고 그 후에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났다면, 처분을 내릴 당시에 그 하자가 명백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취소 사유에 그친다.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가 거의 없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무효 사유가 인정될 뿐이다.

➡ 이미 위헌 결정이 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라면, 처분을 할 당시에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연 무효'가 된다[문단3-1]. 그러나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라면(→ 처분이 선행하고, 위헌 결정이 후행하는 경우) 처분을 할 당시에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취소 사유'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 **맥락 짚기** 법학 지문을 읽을 때는 '원칙, 예외'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어떤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가 성립하는지를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원칙 : 처분이 먼저 내려지고 그 후에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난 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예외 :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가 거의 없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무효 확인을 위한 행정 재송과 달리 취소를 위한 행정 재송은 그 재송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재송 기간의 경과 후에는 위헌 결정으로 취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재송에 의한 취소가 불가능하다.

➡ '무효 사유, 취소 사유'는 모두 행정 재송이 가능하지만, 이 둘은 재송 기간에 있어서 차이점을 갖는다. 앞서 정리한 내용들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취소 사유	무효 사유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은 하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행정 재송을 통한 취소 ⇒ 실제 취소될 때까지 효력 유지	• 당연 무효(→ 행정 재송 없이 무효 성립) • 행정 재송을 통한 무효 판결 ⇒ 애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법적 안정성, 제삼자의 신뢰 보호'를 '처분의 상대방이 받은 피해'보다 중시하는 면이 있음	'처분의 상대방이 받은 피해'를 '법적 안정성, 제삼자의 신뢰 보호'보다 중시하는 면이 있음
재송 기간 ○	재송 기간 ×

문단 4 선행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일 때 후속 처분의 집행 여부

1) **과세 처분** 이후에 납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채납 처분**이 이어질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선행 처분**과 **후속 처분**이 연달아 행해지는 중간에 선행 처분의 근거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 '선행 처분, 후속 처분'과 같이 두 처분이 연달아 행해질 수 있다. 이때 '선행 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다면, 선행 처분에 대해 취소 사유가 발생한 셈이다.

2) 그럴 때 취소 사유가 있는 선행 처분이 실제로 취소되면 후속 처분의 집행도 중단되지만, **쟁송 기간이 경과**하여 선행 처분의 취소가 어렵다면 후속 처분이 집행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후속 처분은 선행 처분과는 별도의 근거 법률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 선행 처분이 취소되면 후속 처분의 집행도 중단되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다고 해서 곧바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재송'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문단1-1].

➡ 또한 취소를 위한 행정 재송은 그 재송 기간이 정해져 있다[문단3-3]. 따라서 재송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설명 '취소 사유가 있는 선행 처분'이라도 그것을 취소할 수가 없고, 따라서 후속 처분도 집행된다.

⚡ **주목** '선행 처분'에 하자가 있음에도 '후속 처분'이 취소될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하자. 비록 그것이 선행 처분에 연달아 집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별개의 법률에 근거를 두었으므로(→ 선행 처분이 근거한, 즉 위헌 결정이 난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으므로), '후속 처분' 자체가 하자를 갖는 것은 아니다.

3) **하자의 승계에 관한 원칙**을 따르더라도, 선행 처분과 후속 처분 간에 무효 사유는 승계되지만 **취소 사유는 승계되지 않는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권의 침해가 반복해서 발생한 바 있다.

➡ '무효 사유'는 승계되므로, 선행 처분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면, 후속 처분도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2)와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4) 이에 **대법원 판례**를 통해 권의 구제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세 처분 이후에 그 근거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난 경우, 그 후속 처분 역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연 무효로 판단하는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2)와 같은 상황에서 '후속 처분'에 대해 '당연 무효'로 판단하고 있단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어떤 **행정청**이 과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갑**에게 과세 처분 **A**를 내렸다. 그 후에 A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자, 갑은 A의 무효 확인을 위한 행정 재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위헌 결정이 난 시점 등을 고려한 법원은 A에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에 갑이 납세를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해당 행정청은 갑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채납 처분 B**를 내렸다.

⚡ **맥락 짚기** A는 선행 처분, B는 후속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단4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여, B가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 A가 내려진 이후에 'A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다는 것은, 처분을 내릴 당시에는 하자가 명백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예외적인 특수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취소 사유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문단3-2].

- 원칙 : 처분이 먼저 내려지고 그 후에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난 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예외 :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가 거의 없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이후 후속 처분으로 연달아 B가 내려졌는데, 그 효력은 'A에 대한 쟁송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달렸다. A가 행정 쟁송을 거쳐 실제로 취소되면, B의 집행도 중단되기 때문이다.

➡ 'A에 대한 쟁송 기간이 경과한 후의 상황'이라면, 더 이상 A에 대한 쟁송이 제기될 수 없으므로, 쟁송을 통해서는 A가 취소될 수 없다[문단4-2]. 즉 그에 따라 B의 집행도 중단되기가 어렵다. 이때 갑의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문단 4-4)의 '대법원 판례'를 활용해야 한다.

∴ 반면 'A에 대한 쟁송 기간이 경과하기 전의 상황'이라면, A에 대한 쟁송을 제기하여 A가 실제로 취소될 수 있다. A가 실제로 취소되면 B의 집행도 중단될 수 있다[문단4-2]. 그러나 이는 'A의 하자가 B에 승계'되기 때문은 아니다. 하자의 승계에 관한 원칙에 따르면 선행 처분과 후속 처분 간에 무효 사유는 승계되지만 취소 사유는 승계되지 않는다[문단4-3]. 즉 A는 취소 사유가 있는 처분이므로 A의 하자는 B에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②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8~11] 과학

갈바니 전지의 원리

지문 평가

정보량이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개념들 간의 관계가 제법 복잡하고, 누적하여 이해해 나가야 하는 내용들이 많다. 차분하게 정보들을 정리해 가면서 글을 읽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하자.

키워드

과학 - 화학 - 갈바니 전지

화학 전지, 산화 전극, 산화, 환원 전극, 환원, 전기 에너지, 갈바니 전지, 표준 환원 전위, 표준 상태, 전지 전위, 표준 전지 전위, 비표준 상태, 농도차 전지

문단 1 화학 전지

1)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건전지처럼,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화학 전지**라 부른다. 화학 전지는 통상 산화 전극과 환원 전극으로 이루어진다. **산화 전극**에서는 전자를 잃는 반응인 **산화**가, **환원 전극**에서는 전자를 얻는 반응인 **환원**이 일어나며, 산화 전극에서 산화가 일어날 때 산화 전극을 빠져 나온 전자가 전선을 따라 자발적으로 환원 전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다.

➡ 화학 전지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산화 전극'에서는 전자를 잃는 반응이 나타나고, '환원 전극'에서는 전자를 얻는 반응이 나타난다.

✖ 주목 그런데 여기서 '환원 전극'이 얻는 전자는 '산화 전극'이 잃은 전자이다. 전자는 산화 전극에서 환원 전극으로 전선을 따라 이동하게 되고, 이러한 '전자의 자발적인 이동'이 곧 '전기 에너지의 발생'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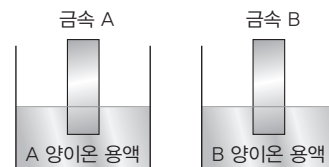
2) 화학 전지의 여러 유형들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갈바니 전지**가 있다.

☞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화학 전지 중에서도 '갈바니 전지'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자. 얘기가.

문단 2 갈바니 전지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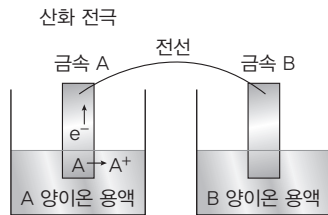
1) **갈바니 전지**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용액에 종류가 다른 금속이 담겨 있고, 각 용액에 해당 금속의 양이온이 녹아 있는 구조를 띤다.

☞ 맥락 짚기 '갈바니 전지'의 구조를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간략하게라도 그려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어지는 설명을 제대로 쫓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편의상 종류가 다른 두 금속을 A, B로 표기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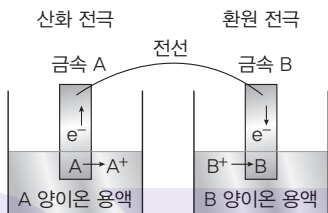
2) 두 금속을 전선으로 연결하면 산화 전극을 이루는 금속의 원자는 전자를 잃고 금속 양이온이 되며[→ 산화되며], 그 결과 용액 속 금속 양이온 농도가 서서히 높아진다.

➡ A 쪽을 산화 전극이라고 하자. '산화 전극'에서는 산화가 일어나서 금속의 원자는 전자[e^-]를 잃고 A 금속 양이온[A^+]이 된다. 따라서 용액 속 A^+ 의 농도는 점차 증가한다.



3) 이때의 전자는 환원 전극으로 이동하여 환원 전극의 금속 표면 근처에서 용액에 녹아 있던 금속 양이온과 결합하면서 환원 전극의 일부가 되며, 그 결과 용액 속 금속 양이온 농도가 서서히 낮아진다.

➡ 대체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산화 전극이 잃은 전자는 전선을 따라 환원 전극[→ 여기서는 B]으로 이동한다[문단1-1]. 그런 후 산화 전극에서와는 반대로 B 금속 양이온[B^+]이 전자와 결합하여 다시 B 금속을 구성하므로, B^+ 의 농도는 점차 감소한다.



※※ 주목 '산화 전극, 환원 전극'의 경우를 나열하면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둘을 구분해서 정리해 두는 편이 좋다.

	산화 전극	환원 전극
화학 반응	전자를 잃는 반응	전자를 얻는 반응
전자가 이동한 결과	금속 양이온 농도 ↑	금속 양이온 농도 ↓

문단 3 표준 상태에서의 전지 전위

1) 갈바니 전지에서는 '표준 환원 전위'가 서로 다른 두 금속이 전극으로 사용된다. [표준 환원 전위]란 [표준 상태]에서, 즉 온도가 25℃, 압력이 1기압, 금속 양이온 농도가 1M(= 몰 농도, 용액 1리터에 녹아 있는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인 상태에서 금속이 전자를 얻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금속은 종류에 따라 고유한 표준 환원 전위를 가지며, 그 값이 클수록 산화보다는 환원이, 작을수록 환원보다는 산화가 더 잘 일어난다.

➡ A, B와 같은 각각의 금속들은 고유한 '표준 환원 전위'를 갖는다. 이는 말 그대로 환원되려는[→ 금속이 전자를 얻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므로, 그 값이 클수록 '환원'이 더 잘 일어난다.

2) 그래서 갈바니 전지에서는 표준 환원 전위가 작은 금속이 산화 전극에, 표준 환원 전위가 큰 금속이 환원 전극에 사용된다.

※※ 주목 '표준 환원 전위'가 다른 두 금속이 있을 때, 표준 환원 전위가 큰 쪽이 '환원 전극'으로, 작은 쪽이 '산화 전극'으로 기능한다.

	산화 전극	환원 전극
화학 반응	전자를 잃는 반응	전자를 얻는 반응
전자가 이동한 결과	금속 양이온 농도 ↑	금속 양이온 농도 ↓
표준 환원 전위	표준 환원 전위 ↓	표준 환원 전위 ↑

3) 화학 전지에서 전자가 자발적으로 이동하여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힘을 '전지 전위'라 하는데, 표준 상태에서의 전지 전위인 '[표준 전지 전위]'는 환원 전극의 표준 환원 전위에서 산화 전극의 표준 환원 전위를 뺀 값으로 정의된다.

➡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힘이란, '전자'가 '산화 전극'에서 '환원 전극'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힘을 뜻한다[문단1-1].

➡ 그렇다면 '표준 환원 전위'의 차이가 클수록, 전지 전위도 커질 것이다. 그 렷수록 한쪽 금속에서는 '환원'이 더 잘 일어나고, 다른 쪽 금속에서는 '산화'가 더 잘 일어날 테니 말이다[문단3-1].

※※ 맥락 짚기 이렇게 개념들 간의 관계가 수식의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되도록 수식의 형태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text{표준 전지 전위} = \text{환원 전극의 표준 환원 전위} - \text{산화 전극의 표준 환원 전위}$$

➡ 애당초 '표준 환원 전위'가 더 높은 쪽이 '환원 전극'으로 기능하므로[문단 3-2], 표준 전지 전위는 항상 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형태를 취한다. 즉 양의 값을 가질 것이다.

문단 4 비표준 상태에서의 전지 전위

1) 갈바니 전지에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두 전극의 표준 환원 전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정해지지만, ……

➡ 전자의 이동 방향이 두 전극의 '표준 환원 전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전자는 '산화 전극'에서 '환원 전극'으로 이동하는데[문단1-1], 표준 환원 전위가 '더 큰 쪽'이 환원 전극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전자의 이동 방향 : 표준 환원 전위가 작은 쪽[→ 산화 전극]에서 큰 쪽[← 환원 전극]으로 흐른다.

2) …… 전지 전위는 양쪽의 금속 양이온 농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금속 양이온 농도가 1M이 아닌 [비표준 상태]일 때에는 전지 전위가 표준 전지 전위보다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이다.

※※ 주목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내용이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표준 전지 전위'는 표준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다[문단3-1]. 따라서 '비표준 상태'에서는 '표준 전지 전위'가 아닌 '전지 전위'를 따져야만 한다.

3) 금속 양이온 농도가 1M이 아닌 비표준 상태에서의 전지 전위는 표준 전지 전위에서 특정한 값을 뺀 값으로 정해지는데, 이때의 특정한 값을 X라 가정하자.

➡ 논의를 이어가기에 앞서 편의상 'X'라는 표현을 도입하고 있다. 수식을 활용하여 접근하는 편이 용이할 테니, 이 경우에도 수식을 취하는 편이 좋겠다.

$$\text{전지 전위} = \text{표준 전지 전위} - X$$

4) X는 산화 전극 쪽 금속 양이온 농도가 환원 전극 쪽 금속 양이온 농도보다 클 때에는 양의 값을, 그 반대일 때에는 음의 값을 가지며, 양쪽의 금속 양이온 농도가 같으면 0이 된다.

※※ 주목 이때 X의 값은 두 전극이 담긴 용액의 '금속 양이온 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금속 양이온 농도' 또한 앞서 다룬 개념이다[문단2-2, 3].

$X > 0$	산화 전극 쪽 금속 양이온 농도 > 환원 전극 쪽 금속 양이온 농도
$X = 0$	산화 전극 쪽 금속 양이온 농도 = 환원 전극 쪽 금속 양이온 농도
$X < 0$	산화 전극 쪽 금속 양이온 농도 < 환원 전극 쪽 금속 양이온 농도

5) 결국 환원 전극 쪽 금속 양이온 농도가 산화 전극 쪽 금속 양이온 농도보다 높을 때에는 전지 전위가 표준 전지 전위보다 커지고, 그 반대일 때에는 작아진다. 양쪽의 금속 양이온 농도가 동일할 때에는 비표준 상태이더라도 전지 전위가 표준 전지 전위와 동일한 값을 갖는다.

➡ 앞선 수식을 고려했을 때[문단4-3], 당연한 귀결이다.

$X > 0$	산화 전극 쪽 금속 양이온 농도 > 환원 전극 쪽 금속 양이온 농도	표준 전지 전위 > 전지 전위
$X = 0$	산화 전극 쪽 금속 양이온 농도 = 환원 전극 쪽 금속 양이온 농도	표준 전지 전위 = 전지 전위
$X < 0$	산화 전극 쪽 금속 양이온 농도 < 환원 전극 쪽 금속 양이온 농도	표준 전지 전위 < 전지 전위

문단 5 농도차 전지

표준 환원 전위가 양쪽 전극에서 같다면 금속 양이온 농도가 낮은 쪽에서 산화가 일어난다. 이를 이용하면, 두 전극에 동일한 종류의 금속을 사용하면서 두 전극 쪽의 금속 양이온 농도만을 달리하는 화학 전지인 **농도차 전지**를 만들 수도 있다.

➡ 초점을 전환하여 '농도차 전지'를 소개하고 있다. 표준 환원 전위가 양쪽 전극에서 같다면[→ 금속은 종류에 따라 고유한 '표준 환원 전위'를 가지므로, 동일한 종류의 금속을 사용했다는 뜻이다.], '표준 전지 전위'는 0이 된다[문단3-3].

표준 전지 전위 = 환원 전극의 표준 환원 전위 - 산화 전극의 표준 환원 전위 = 0

※※ 주목 그런데 표준 전지 전위가 0이라도, 금속 양이온 농도가 낮은 쪽에서는 '산화'가 일어난다. 그 논리를 잘 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금속 양이온 농도가 낮은 쪽이 존재한다는 것은 양쪽의 '금속 양이온 농도'가 다르다는 뜻이므로, 비표준 상태임을 의미한다[문단4-2]. 다시 말해, '전지 전위'는 0이 아닐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지 전위'가 양의 값이라면 전자가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문단3-3].

$X < 0$	산화 전극 쪽 금속 양이온 농도 < 환원 전극 쪽 금속 양이온 농도	표준 전지 전위 < 전지 전위
---------	---------------------------------------	------------------

➡ 이러한 논리에 따라 농도차 전지에서는 '금속 양이온 농도'가 낮은 쪽이 산화 전극으로 기능하고, '금속 양이온 농도'가 높은 쪽이 환원 전극으로 기능하게 된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두 종류의 금속 A 혹은 B를 조합하여 **갈바니 전지**나 **농도차 전지**를 구성하는 '실험' (가)~(다)에서, 전극의 금속 종류와 해당 전극이 담겨 있는 용액 속 금속 양이온 농도는 다음과 같았다. 단, 표준 환원 전위는 A가 B보다 크며, 모든 실험에서 온도와 압력은 각각 25℃와 1기압으로 유지되었다.

실험	전극 1	전극 2
(가)	A, 1M	B, 1M
(나)	A, 2M	B, 농도 알려지지 않음
(다)	A, 1M	A, 2M

※※ 맥락 읽기 '화학 전지'의 원리를 토대로 전극 1, 2 중에서 어느 쪽이 각각 산화 전극, 환원 전극으로 기능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금속 양이온 농도'가 주어졌으므로, 이를 통해 '전지 전위'를 파악할 필요도 있다. 앞서 정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 (가), (나)는 양쪽 전극을 구성하는 금속이 다르므로 '갈바니 전지'에 해당한다[문단2-1]. (다)는 양쪽 전극을 구성하는 금속이 같으므로 '농도차 전지'에 해당한다[문단5].

➡ 먼저 (가), (나)는 A의 표준 환원 전위가 더 크므로, 전극 1이 '환원 전극', 전극 2가 '산화 전극'으로 기능한다[문단3-2]. 따라서 전지는 전선을 따라 전극 2에서 전극 1로 이동한다[문단4-1].

	산화 전극	환원 전극
화학 반응	전자를 잃는 반응	전자를 얻는 반응
전자가 이동한 결과	금속 양이온 농도 ↑	금속 양이온 농도 ↓
표준 환원 전위	표준 환원 전위 ↓	표준 환원 전위 ↑

※※ 주목 (가)와 달리 (나)는 '비표준 상태'에 있다. (나) 전극 1[→ 환원 전극]의 금속 양이온 농도가 1M이 아니기 때문이다[문단4-2]. 그에 따른 전지 전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질 것이다[문단4-5].

$X > 0$	산화 전극 쪽 금속 양이온 농도 > 환원 전극 쪽 금속 양이온 농도	표준 전지 전위 > 전지 전위
$X = 0$	산화 전극 쪽 금속 양이온 농도 = 환원 전극 쪽 금속 양이온 농도	표준 전지 전위 = 전지 전위
$X < 0$	산화 전극 쪽 금속 양이온 농도 < 환원 전극 쪽 금속 양이온 농도	표준 전지 전위 < 전지 전위

∴ (나)에서 전극 2 쪽 금속 양이온 농도가 전극 1 쪽보다 높다면, 이는 X가 양의 값이라는 뜻이다. 즉 (나)의 전지 전위는 '표준 전지 전위'에 비해 작아진다[문단4-5]. 그런데 '표준 전지 전위'는 표준 상태에 있는 (가)의 전지 전위와 같으므로[문단3-3], (나)의 전지 전위는 (가)보다 작다. 따라서 ④번 선택지는 적절하다.

➡ (다)는 '농도차 전지'로 금속 양이온 농도가 높은 전극 2가 '환원 전극'으로 기능하고, 농도가 낮은 전극 1이 '산화 전극'으로 기능한다[문단5]. 따라서 (다)에서 전지는 전극 1에서 전극 2로 이동한다[문단4-1].

인간 향상에 대한 다양한 논의

— 자문 평가

전체적으로 매우 평이한, 전형적인 관점 중심의 글이다. 크게 막힐만한 대목도 없으므로 술술 읽힐 것이다.

키워드

(가) 인문 - 윤리학 - 도덕성 향상

인간 향상, 트랜스휴머니즘, 후쿠야마, 자연적 본성, 더글러스, 도덕성 향상

(나) 인문 - 윤리학 - 도덕성 향상과 자유

해리스, 타락할 자유, 페르소나 사블레스쿠, 결정론의 상태, 비결정론적 자유, 도덕의 부재

(가)문단 1 인간 향상의 부정적 측면

1) 약물 처리나 유전자 조작과 같은 생명 기술을 통해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지적, 육체적, 정서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인간 향상’**이라 한다.

➡ 생명 기술을 활용하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가리켜 ‘인간 향상’이라 한다.

2) 약물 복용을 한 선수에게 사회적 비난이 가해지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 향상을 택하지 않은 이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로 이를 옹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인간 향상에 긍정하는 입장인 **트랜스휴머니즘**조차 기술의 사용 측면에서는 위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 ‘인간 향상’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이다. ‘약물 복용’을 통해 육체적 능력을 향상하는 것 또한 약물 처리를 통한 ‘인간 향상’에 포함된다. 우리에게 그나마 익숙한 ‘약물 복용’이 비난을 받듯이, 인간 향상은 기본적으로 비난의 대상이다.

(가)문단 2 인간 향상에 반대하는 관점

인간 향상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후쿠야마**는 인간 권리의 기반이 되는 인간의 **도덕적 지위나 존엄성은 인간의 보편적인 자연적 본성**에 의존한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인간 본성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해 주는 것으로, 이를 구성하는 여러 특성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의 입장에 따르면 인간 향상은 이러한 인간 본성을 변화시키거나 파괴할 우려가 크다.

➡ ‘후쿠야마’는 인간 향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적 본성을 ‘인간 향상’을 통해 변화시키거나 파괴한다면, 그것에 의존하는 ‘도덕적 지위’나 ‘존엄성’도 흔들린다는 것이다.

(가)문단 3 도덕성 향상을 긍정하는 관점

1) 인간 향상에 대한 반대론들에도 불구하고, **더글러스**는 다양한 측면의 인간 향상 중 도덕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도덕성 향상’**만은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도덕성 향상은 도덕적이지 않은 감정들, 이를테면 충동적 공격성, 인종 혐오 등을

약화시켜서 **선한 동기**를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더글러스는 신체나 지능 향상과 달리 **도덕성 향상**은 다른 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 ‘더글러스’는 인간 향상 중에서 ‘도덕적 향상’만은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은 아니다. 도덕적 향상은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다른 인간 향상과 달리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문단-2].

✖✖ 주목 두 관점이 열거되었으므로 구분하여 이해하도록 하자. 정반대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

후쿠야마	더글러스
모든 인간 향상을 부정	인간 향상 중에서 도덕성 향상만 긍정

2) 약물 복용에 의존하여 경기에서 승리하는 경우와 달리, 인종 혐오를 일삼던 이의 뇌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인종 혐오에 반감을 가지게 된다면 인종 혐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가)문단 4 도덕성 향상에 대한 반대

1) 도덕성 향상 역시 우리의 타고난 성격이나 사고방식을 특정한 방향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 있다.

➡ 반면 ‘도덕적 향상’까지도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있다. 설령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적어도 타고난 바를 변경한다는 점에서 ‘강제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적 본성’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후쿠야마’의 주장과 근본적으로 달아 있다[문단2].

2) 이에 대해 더글러스는 우리가 평소에 도덕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선한 동기를 고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 이를테면 도덕 교육이나 도덕적인 삶의 기반이 되는 제도 정비 등도 그러한 강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 교육이나 제도 정비 등을 허용하는 것과 같이 도덕성 향상도 허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 ‘더글러스’의 반박이다. 도덕 교육을 통해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나, 도덕적 향상을 통해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이를 ‘강제’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부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문단 1 도덕성 향상과 인간의 자유

1) 생명 기술을 통해 도덕적 능력을 향상시킨 사람의 행위를 자율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해리스**는 **도덕성 향상**이 우리의 자유를 앗아 간다고 지적한다.

ⓧ 맥락 짚기 통합 지문을 읽을 때에는 (나)를 읽으면서 (가)의 내용을 적절하게 끌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가)에서는 인간 향상 중에서 ‘도덕적 향상’ 정도는 적절한가에 대한 찬반을 다루었다면, (나)에서는 과연 ‘도덕적 향상’으로 인한 행위가 ‘자율적인 행위’인가를 다루고 있다.

➡ 먼저 ‘해리스’는 도덕적 향상이 우리의 자유를 앗아간다고 주장한다. 즉 ‘도덕적 향상’으로 인한 행위가 ‘자율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2) 그에 따르면 도덕적 행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선한 동기를 넘어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지로**, 인간이 진정한 자율적인 존재이기 위해서는 **타락할 자유**까지도 지녀야 한다. **부도덕**

한 행위도 할 수 있어야만, 오로지 그러한 자유까지 있을 때에만 의지에 따라 도덕적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곧 자유로운 상태이며 자율성을 발휘하는 상태라는 것이다.

▶ 한마디로 그럴 수밖에 없어서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은 자율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타락할 자유'까지도 지니고 있어서, '부도덕한 행위, 도덕적 행위' 중에서 '도덕적 행위'를 선택할 때에야 자율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3) 해리스가 보기에 생명 기술에 의존하여 도덕적 능력이 향상된 사람은 스스로의 자유 의지에 따라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도덕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그를 자유로운 존재라고 규정하기는 힘들다.

▶ 앞선 설명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내용이다.

(L1) 문단 2 페르손과 사블레스쿠의 논증

- 1) 사람들의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강제한다는 점을 들어 도덕성 향상이 자유를 훼손한다는 해리스의 주장에 대해, 페르손과 사블레스쿠는 몇 가지 가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박한다.

▶ '해리스의 주장'에 대한 '페르손과 사블레스쿠'의 반박이다. 어떤 근거를 들어 반박하는지, 즉 도덕성 향상으로 인한 행위가 왜 여전히 자율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먼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것인지가 완전히 결정되어 있는 결정론의 상태와 우리의 자유가 양립 가능하다고 가정해 보자. 페르손과 사블레스쿠는 이럴 때에 도덕성 향상은 우리의 자유를 줄이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 상황에서의 도덕성 향상은 단지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더 자주, 나아가 항상 그렇게 하도록 결정하는 것일 뿐이다.

▶ '먼저'라는 표현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가정들을 도입하여, 그 각각의 경우들을 따질 것임을 알 수 있다.

▶ 첫 번째로 '결정론의 상태와 자유가 양립 가능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이미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결정되어 있다면, '도덕성 향상'에 의해 우리는 그 일을 항상 하게 될 뿐이다. '자유'는 여전히 양립 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자유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 3) 이어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것인지가 결정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자유로운 상태라고 가정해 보자. 페르손과 사블레스쿠는 이럴 때에 우리는 본래부터 자유롭고, 그 비결정론적 자유에 의해 때면 도덕적 행위를 택하도록 하는 도덕성 향상의 효과가 조금 제한될 뿐이라고 말한다.

▶ 두 번째로 '결정론의 상태 없이, 자유만이 존재하는 경우'→ 비결정론적 자유'에 관한 설명이다. 애초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도덕성 향상'에 의해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자유로 인해 도덕성 향상의 효과가 다소 제한된다.

- 4) 또한 자유란 본래 없었고 결정론의 상태만이 이어져 왔다고 가정하면 도덕성 향상이 제한할 자유는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자유 없이, 결정론의 상태만이 존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애초에 자유가 없었으므로, 제한할 자유도 없다. 따라서 '도덕성 향상'에 의해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도 모순이다.

※ 주목 즉 어떤 가정하에서도, '도덕성 향상'에 의해 자유가 제한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페르손과 사블레스쿠'의 주장이다.

(L1) 문단 3 페르손과 사블레스쿠의 주장

- 1) 나아가 페르손과 사블레스쿠에 따르면 설령 도덕성 향상이 자유를 훼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그른 것은 아니다. 자유는 다양한 가치 중 하나일 뿐이며, 도덕성 향상을 통해 다른 가치 있는 것들, 가령 생명권이나 폭력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 등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더 나아가 도덕성 향상이 '자유'를 훼손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그른다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 '자유' 이외에도 다른 가치들이 있으므로, 도덕성 향상을 통해 다른 가치들이 보호될 수 있다면 여전히 '도덕성 향상'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 더욱이 그들은 도덕성 향상이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에 대한 선택만을 제한할 뿐,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여전히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 말한다. 충동적으로 타인을 공격할 자유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나 물품 구매의 자유 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 또한 도덕성 향상이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모든 영역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덕성 향상이 제한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선택할 자유'뿐이기 때문이다.

- 3) 그들은 도덕성 향상에 대한 더글러스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더라도 인류의 존속조차 위협하는 도덕의 부재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설령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더라도, 도덕성 향상으로 인해 다른 가치들이 보호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이다[→ 이를 '도덕의 부재'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의무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더글러스'와 같이 '도덕성 향상'만은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가)의 문단3-1]].

<보기> 분석

<보기> 문단

- ㉗ 바람직하지 않은 본성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할 경우에, 우리가 보존해야 할 본성의 좋은 특성마저도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

Ⓢ 맥락 짚기 이러한 유형은 <보기>를 전부 이해하고 각 선지들을 판단하기 보다는, ㉗만 읽고 ㉘를 다루는 선지들만 먼저 판단하는 식으로 <보기>와 선지를 오고 가는 편이 더 유리하다.

▶ ㉘는 자연적 본성의 변화에 반대하는 '후쿠야마'의 관점에 대응된다(가)의 문단2. 그러한 점에서 후쿠야마는 모든 인간 향상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 ㉔ 지능 향상과 같은 인지 능력의 향상에 비례하여 이타성이나 공정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이지 못한 이들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켰을 때 더 잔인해질 수 있다.

∴ ㉘는 인간 향상 중 '인지 능력의 향상'의 부정적인 면을 들어, 특정 인간 향상에 반대하는 관점이다[→ 바꿔 말하면, 그 밖의 인간 향상은 반대하지 않는다.]. 즉 이는 '도덕성 향상'만은 허용 가능하다는 '더글러스'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㉘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㉕ 도덕규범은 마땅히 해야만 하는 당위의 것으로,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하는 것에서 인간의 권리 개념이 도출된다. 규범에 의한 사회적

규제를 외면하고 **개인의 판단**에만 도덕을 맡길 수는 없다.

➡ ㉔는 애초에 도덕규범은 '당위의 영역'임을 짚고 있다. 즉 도덕적 행위가 '개인의 자율적인 행위'일 필요가 없음을 짚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도덕적 향상이 자유를 훼손한다는 '해리스'의 관점과는 반대되고[**(나)**의 문단], 자유를 제한하든 제한하지 않든 '도덕적 향상'을 통해 '도덕적 행위'로 이끄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페르손과 사블레스쿠'의 관점에는 대응된다[**(나)**의 문단3-3].

➡ 또한 그렇기 때문에 ㉔는 '페르손과 사블레스쿠'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향상'을 긍정하는 '더글러스'의 관점은 수용하지만, 반대로 '해리스'의 관점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나)**의 문단].

㉔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 해악에 대한 공포가 만연하고 있다. 그 위협은 **도덕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를 없애려면 **과학 기술의 직접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

➡ '도덕의 부재'를 명시하고 있다. 즉 '페르손과 사블레스쿠'의 관점에 대응된다[**(나)**의 문단3-3]. 이를 위해서는 '과학 기술을 통한 인간 향상'까지도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22~26] 고전시가

(가) 「면양정가」

- 송순 -

— ㉔ — 수록 지문 평가

「면양정가」는 강호 자연에 은거하는 사대부의 이상적인 삶을 그린 작품이다. 면양정 주위의 자연물과 작가[→ 화자]의 모습이 조응되는 양상을 통해 강호 자연과 조화를 이룬 삶을 그리고 있다.

인간(人間)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없다

➡ 일하느라고 바쁘다는 말이 아니라, 강호 자연에 묻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기느라 바쁘다는 것이다. 그만큼 즐길 거리가 많다는 자랑을 하는 것이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일랑 언제 줍고 고기는 언제 낚고

사립문 뉘 닫으며 진 꽃은 뉘 쓸려노

➡ 밤을 줍는 일이나 고기를 낚는 일은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자연을 즐기는 일에 해당하며, 사립문을 닫는 일이나 떨어진 꽃을 빗자루로 쓰는 일은 번거로운 노동이 아니라 한가로운 흥취를 불러일으키는 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밤일랑 언제 줍고 고기는 언제 낚고'는 바쁘다는 한탄이 아니고, '사립문 뉘 닫으며 진 꽃은 뉘 쓸려노'는 시킬 사람이 없다는 한탄이 아니다.

아침이 모자라니 저녁이라 싫을쏘나

→ 아침 시간이 [그러한 즐거움을 즐기기에] 부족하니, 저녁이라고 [즐기는 것이] 싫겠느냐.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야 유여(有餘, 여유가 있음)하랴

➡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 내일도 바쁠 것이라는 말인데, 다시 강조하지만 이는 바쁘다는 한탄이 아니라 즐길 거리가 많다는 자랑이다. 설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뒤편에 앉아 보고 저 뒤편에 걸어 보니

번로(煩勞, 일이 번거로워 괴롭고 고됨)한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다

설 사이 없거든 길이나 전하리야

➡ 즐길 거리가 많아서 설 사이가 없는데 남들에게 여기로 오는 길을 알려 줄 틈이 있겠는가 하는 말이다. 이 좋은 자연을 자기만 즐기고 싶다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한 청려장(靑藜杖, 명아쫓대로 만든 지팡이)이 다 무디어 가노매라

➡ 여기저기 구경 다니느라 명아쫓 지팡이가 다 닳아 무뎠다는 자랑이다.

술이 익었거니 벗이라 없을쏘나

불리며(=부르게 하며) 타이며(=타게 하며) 켜이며(=켜게 하며) 흔들며

온갖 소리로 취흥(醉興)을 재촉하니

➡ 벗들과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며 즐기는 모습이다.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누울락 앉을락 굽힐락 젖힐락

윙글락 휘파람 불락 마음대로 놀거니

➡ 화자는 면양정에서 근심도 시름도 없이 마음껏 자유를 즐기고 있다. 강호 자연과 조화를 이룬 삶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천지(天地)도 넓고 넓고 일월(日月)도 한가하랴

희황(羲皇, 중국 고대에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제왕 복희씨)을 몰랐더니 이 때가 그때로다

신선이 어떻던가 이 몸이 그로구나

➡ 지금이 바로 복희씨의 태평성대이고 자신이 바로 신선이라는 말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27~30] 현대시

(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백석 —

작품 평가

이 작품의 제목은 '남쪽 신의주의 유동[→ 버드나무 마을]에 사는 박시봉 댁'이라는 의미로 편지 봉투에 쓰는 주소이다. 이름 뒤의 '방(方)'은 일본어 표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편지에 주소를 쓸 때 한동안 널리 쓰였던 방식이다. 제목이 주소로 되어 있어 이 시를 편지글로 보는 해석도 있으나, 자신이 거처하는 주소를 제목으로 쓴 것은 고향에 있지 않고 유랑하는 처지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토막 1 상황 제시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세게 부는)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 참 사정이 딱하게 됐다. '쓸쓸한 거리'는 유랑민의 삶의 처지를 공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 앞친 데 뒤편 격이다. 이렇게 물려가다 결국 박시봉 씨네 집에 빌붙어 살게 된 것이다.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현 샷(=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을 깬,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주인집에 세 들었다].
▶ 집주인이 목수인 것을 보니, 집주인도 당시 힘겹게 살던 민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난한 민중이 떠돌던 화자를 거두어 준 셈이다.

토막 2 슬픔과 자괴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습기 찬냄새) 나는 좁고, 누긋한(=눅눅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 누추한 곳이지만 불평할 때가 아니다. '나는 나 하나도 감당하기 벅찬' 처지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덜용배기(=질긋, 질화로)에 북덕(=짚부스리기)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찌며 재 위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 참 소박한 화로불이지만 이 온기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런저런 상념에 젖어 글을 쓰기도 한다.
또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잇달아) 썰김질(=되새김질)하는 것이었다.
▶ 지극히 무기력한 모습이다. 자기 자신의 무능을 탓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보여준다.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힘을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내 가슴이 짝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 눈물]이 핑 괴일 적이며,
▶ 자신이 참 보잘것없는 사람임을 뼈저리게 자각하는 데서 오는 눈물이다.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 화자는 자신의 슬픔과 어리석음을 되새김질할수록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토막 3 운명에 대한 인식

그러나 잠시 뒤에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방을 둘러봄],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 내 뜻과 힘]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 세상에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으니 나의 무능력을 한탄하고 자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체념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용기 있게 긍정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화자는 박시봉 씨와 같은 민중의 누추한 삶의 거처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것이다.

토막 4 굳고 정한 삶에 대한 다짐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 자신의 한계를 알았고 세상은 더 넓은 힘의 각축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자신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감정들을 정화할 차례다.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뭇손(= 저력 무렵)에 싹랑싹랑 싸락눈[→ 시련]이 와서 문창(=문과 창문)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 물론 가족과 떨어져 있어 여전히 외롭다. 이때, 화자는 '문창'을 통해 세상에 싸락눈이 내리고 있는 것을 본다. 이 싸락눈 앞에서 나만 홀로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섬(=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야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싹랑싹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화자는 누가 봐 주지 않고, 또 함께 하는 이가 없[→ '바우섬에 따로 외로이 서서'] 시련과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경건한 태도로[→ '무릎을 꿇어 보며'] 떠올린다. '갈매나무' 덕분에 이제 화자는 더 이상 자기 고통에 짓눌려 죽지 않게 될 것이다.
▶ 이 시는 화자가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서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집과 가족을 잃고 남의 집에서 생활하던 화자의 감정 상태를 따라가며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화자가 새로운 통찰에 도달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새로운 깨달음의 끝에 '갈매나무'가 서 있다.